

社內職務發明補償制度 통한 技術確立만이 成長約束

- … 對內外企業競爭이 熾烈해질수록 이를 克服하고 比較優位の 産業을 育成하기 위해서는 그…○
- …企業을 支援해 주는 技術開發이 앞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企業은 頭腦資源을 紐職發明으로…○
- …誘導하기 위하여 從業員의 研究意慾과 參與意識을 높여 주는 社內 職務發明補償規程을 時急…○
- …히 制定 採擇하여 어려운 現實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
- … 다음은 商工部長官의 社內 職務發明補償制度採擇實施 勸誘文과 함께 公務員職務發明補償…○
- …規程, 그리고 既實施하고 있는 代表的 國內企業의 職務發明補償規程을 하나의 모델로서 連…○
- …載, 紹介하오니 널리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編輯者註>…○

職務發明補償制度實施勸誘文

國內外的으로 어려운 經濟與件속에서도 生産性向上과 技術開發에 盡力하시는 貴社의 勞苦에 대하여 眞心으로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持續的인 輸出增大와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한 第2의 經濟跳躍을 이룩하기 위하여 生産性向上에 의한 原價節減과 研究開發에 의한 品質向上, 그리고 新製品開發을 통한 産業의 國際競爭力強化에 總力을 傾注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賦存資源이 貧弱한 우리의 與件에서는 優秀한 頭腦資源의 積極的인 活用을 위하여 發明獎勵風土를 造成하고 이를 企業發展에 直結시키도록 制度化하는 것을 經營戰略의 核心으로 삼아야 하겠으며, 從業員의 研究意慾을 鼓吹하고 士氣를 振作시킬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하기 위하여 從業員의 職務發明에 대한 適正한 補償制度를 採擇하여 實施하는 것이 시급한 課題라 하겠습니다.

職務發明補償制度의 實施를 통하여 發明者는 自身の 創意와 勞力에 대한 正當한 補償을 받게 되므로써 더한층 意慾을 가지고 職務에 專念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從業員들에 대한 波及效果를 통하여 第2, 第3의 發明을 誘發함으로써 보다 큰 企業利益과 成長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發明을 工業所有權化하여 獨占的인 權利를 享有함으로써 企業發展의 主武器로 利用할 수 있는 것입니다.

政府는 이와 같은 職務發明補償制度의 實施를 勸獎하기 위하여 特許法에 職務發明을 한 被用者에게 適正한 補償을 받을 權利를 갖도록 하였고 所得稅法에는 이러한 補償金에 대하여 所得稅를 免除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數年間 國內有數의 企業體들이 이 制度를 採擇實施함으로써 企業成長에 많은 成果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職務發明補償制度는 비단 大企業뿐만 아니라 中小企業도 大企業과의 競爭에서 이기고 나아가 中堅企業 및 大企業으로 跳躍하기 위하여 切實히 必要한 制度인 것입니다.

80年代의 熾烈한 技術競爭與件에서는 企業經營戰略의 要諦가 持續的인 自體研究開發을 통한 技術革新과 新製品開發이 되어야함을 勘案하시어 企業實情에 알맞는 補償制度를 採擇, 實施하시기 바라며 기히 補償制度를 採擇, 實施하고 있는 企業은 制度改善 및 補償金의 引上等을 통하여 이 制度를 더욱 活性化함으로써 어려운 企業環境속에서 企業의 繁榮을 期約하시고 나아가 國家産業發展에 積極 寄與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貴社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합니다.

1982. 1. 12

商工部長官 徐錫俊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

1972. 12. 14 大統領令 第6397號
 1974. 12. 17 大統領令 第7415號
 1976. 11. 6 大統領令 第8273節
 1978. 11. 27 大統領令 第9209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特許法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에 依한 公務員(地方公務員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의 職務發明에 關하여 規定함으로써 이를 保護獎勵하며 研究意慾을 向上시키고 이로 因한 特許權을 合理的으로 管理運營하여 國家産業 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職務發明”이라 함은 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發明한 것이 性質上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의 業務에 屬하고 그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公務員의 任務에 屬하는 境遇를 말한다.
2. “自由發明”이라 함은 第1號의 規定에 依한 發明 以外の 公務員이 한 發明을 말한다.
3. “發明者”라 함은 職務發明을 한 公務員을 말한다.

第3條 (權利的 國家承繼) ① 國家는 職務發明에 依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와 特許權을 承繼한다. 다만, 紛爭中에 있거나 國家가 承繼하는 것이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것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發明者가 한 職務發明이 第3者와 共同으로 한 것인 境遇에는 國家가 그 發明者가 가지는 權利的 持分만을 承繼한다.

第4條 (發明者에 對한 補償) 國家는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權利

를 承繼한 때에는 이 법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5條 (業務의 管掌) 商工部長官은 公務員의 職務發明에 關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1. 職務發明의 國家承繼決定에 關한 事項
2. 自由發明의 國家承繼決定에 關한 事項
3. 登錄補償金 및 國有特許權의 處分補償金의 支給에 關한 事項
4. 職務發明獎勵에 關한 事項

第6條 (發明의 申告) 公務員이 自己가 맡은 業務와 關聯된 發明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內容을 商工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가 所屬하는 機關의 長(以下 “機關의 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7條 (假承繼의 決定) ① 第6條 및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받은 機關의 長은 그 發明이 職務發明에 屬하는지의 與否와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機關의 長이 承繼(以下 “假承繼”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 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內容을 書面으로 發明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8條 (權利的 讓渡) 發明者는 機關의 長으로부터 職務發明에 對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假承繼한다는 決定의 通知를 받

았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權利를 機關의 長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第9條 (出願) ①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讓渡받은 機關의 長은 遲滯없이 特許廳長에게 特許出願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特許出願은 機關의 長 名義로 하여야 한다.

③ 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特許出願을 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發明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0條 (發明者의 特許出願) ① 發明者는 條7條의 規定에 依하여 機關의 長이 特許를 받을 權利를 假承繼하지 아니하겠다는 通知를 받은 이후가 아니던 自己 名義로 特許出願을 할 수 없다. 다만, 當該 發明이 職務發明에 屬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境遇 또는 發明者 名義로 緊急하게 特許出願을 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特許出願을 하였을 境遇에는 그 內容을 第6條의 規定에 準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第11條 (國家承繼決定의 要請) 機關의 長은 第9條의 規定에 依한 特許出願이 登錄査定된 때에는 遲滯없이 그 의견을 添附하여 商工部長官에게 當該職務發明의 國家承繼決定에 關한 要請을 하여야 한다.

■ 企業發展戰略, 그 捷徑 (1)

②商工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要請을 받은 때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發明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承繼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11條의2 (決定通知) 商工部長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承繼決定을 한 때에는 그 內容을 當該 機關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2條 (特許權의 登錄等) ①機關의 長은 第11條의 2의 規定에 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다음과 같이 國家名義로 特許登錄을 하고 그 事實을 商工部長官 및 發明者에게 各各 通知하여야 한다.

特許權者: 나라

管理廳: 商工部長官

承繼廳: 承繼하는 機關의 長의 名稱

②機關의 長은 國家에서 承繼하지 아니하기로 決定된 것은 이를 發明者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第13條 削 除

第14條 (登錄補償金の 支給) 商工部長官은 機關의 長으로부터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받은 때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補償金を 發明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第15條 (登錄補償金) 國家에서 承繼할 것으로 決定한 特許權에 對하여는 權利 每 1件마다 10萬圓의 登錄補償金を 發明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第16條 (國有特許權의 處分補償金)

①商工部長官은 有償으로 國有特許權을 讓渡하거나 第3者에게 그 專用實施權을 設定 또는 通常實施權을 許與하거나 有賞으로 國家가 直接 實施할 때에는 權利 每 1件에 대한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의 年間 收入金を 基準으로 하

여 發明者에게 다음 各號에 의한 處分補償金を 支給하여야 한다.

1. 國有特許權의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 年間收入金이 100萬圓 以下일 때에는 그 讓渡代金이나 實施料의 $\frac{30}{100}$ 에 該當하는 額

2. 國有特許權의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의 年間收入金이 100萬圓을 超過 1,000萬圓 以下일 때에는 다음의 方法으로 計算한 額(當該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 $-100萬圓) \times \frac{20}{100} + 30萬圓$

3. 國有特許權의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의 年間收入金이 1,000萬圓을 超過할 때에는 다음의 方法으로 計算한 額(當該 讓渡代金 또는 實施料 $-1,000萬圓) \times \frac{10}{100} + 210萬圓$

②商工部長官은 無償으로 第3者에게 國有特許權의 專用實施權을 設定 또는 通常實施權을 許與하거나 無償으로 國家가 直接 實施할 때에는 第1項 各號에 準하여 算出된 金額을 處分補償金으로 支給하여야 한다.

第17條~第19條 削 除

第20條 (補償金の 持分支給) 第15條 또는 第16條의 補償金を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發明者가 2人 以上일 境遇에는 그 持分에 따라 支給한다.

第21條 (轉職·退職 및 死亡後의 補償) ①發明者가 轉職 또는 退職한 境遇에도 第15條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은 全額을 支給한다.

②發明者가 死亡하였을 境遇에는 그가 支給받을 수 있는 補償金을 相續人에게 支給한다.

第22條 (補償金の 不返還) 發明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支給된 補償金은 그 特許가 無効로 된 境遇에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다

만, 特許가 冒認에 의하여 無効로 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3條 (委員會의 設置) 職務發明 및 國有特許權에 關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商工部에 職務發明審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4條 (委員會의 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委員 10人 이내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商工部次官이 되고, 委員은 經濟企劃院企劃次官補, 財務部財政次官補, 總務處企劃管理室長, 科學技術處科學技術審議室長, 特許廳次長, 工業振興廳次長 및 特許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商工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가 된다.

③委員會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專門家로 構成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④專門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商工部長官이 定한다.

第25條 (委員長)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會務를 統理하고 委員會를 代表한다.

②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特許廳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26條 (委員會의 審議事項)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發明의 國家承繼에 關한 事項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自由發明의 國家承繼에 關한 事項
3. 職務發明의 獎勵에 關한 事項
4. 第1號 乃至 第3條外에 商工部長官이 附議하는 事項

第27條 (委員會의 議事등) ①委員長은 必要에 따라 委員會의 會議을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會議은 在籍委員(委員長을 包含한다)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議長은 表決의 結果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28條 (幹事) ①委員會에 幹事와 書記 各 1人을 둔다.

②幹事는 特許管理局長이 되고 書記는 特許廳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③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하며 書記는 幹事를 補助한다.

第29條 (運營細則) 이 令에 規定한 것 外에 委員會의 運營에 關한 必要한 事項은 委員長이 定한다.

第30條 (自由發明의 承繼) ①自由發明에 對하여 發明者로부터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權을 國家에 讓渡한다는 申請이 있을 때에는 이 令에서 定하는 職務發明의 承繼節次에 準하여 決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權을 承繼한 境遇에는 第12條, 第14條 乃至 第16條, 第20條 乃至 第22條, 第31條 乃至 第

34條를 各各 準用한다.

第31條 (發明者의 義務) 發明者는 그가 한 職務發明의 處分 또는 實施에 있어서 國家 또는 實施許與를 받은 者가 必要로 하는 事項이 있을 때에는 이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第32條 (秘密保持) 發明者 또는 職務發明에 關한 事業에 從事하는 者는 그 職務發明의 內容에 對한 秘密을 지켜야 한다.

第33條 (實用新案 및 意匠에 關한 準用) ①이 令은 實用新案 및 意匠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補償金은 實用新案權에 대하여는 5萬圓, 意匠權에 대하여는 3萬圓으로 한다.

第34條 (職務發明狀況通告) 機關의 長은 職務發明에 關한 承繼與否 및 그 內容 其他 職務發明에 關한 狀況을 商工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第35條 (商工部令) 이 令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商工部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令은 1973年 1月 1

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規定) 이 令 施行當時 公務員의 職務發明에 關하여 特許出願된 것은 이 令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令 施行當時 公務員의 職務發明에 의하여 登錄된 國有特許權은 이 令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다만,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補償金은 支給하지 아니한다.

附 則

〈74. 12. 12大統領令第7415號〉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74. 11. 6大統領令第8273號〉

①(施行日) 이 令은 公布後 1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令 施行當時의 國有特許權의 處分, 管理規定第19條의 職務發明補償審議委員會는 이 令에 의한 職務發明審議委員會로 본다.

附 則

〈78. 11. 27大統領令第9209號〉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계 속—



會員企業創立紀念

☒ 2月中 ☒

〈日字順〉

◎……本會는 誌上을 빌어 다음 會員企業의 創立紀念日을 慶賀합니다……◎

韓國科學技術院(院長: 林 寬)
韓國電子通信(株)(代表: 李春和)

16周年(2. 10) | (株) 모나미 (代表: 宋三錫)
5周年(2. 15)

12周年(2. 15)